

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

보 정 명 령

사 건 2023년단10652 상속포기
[청구인 : 조광염 / 사건본인 : 조창선]
청구인 조광염 (귀하)

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(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았고, 이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)로부터 3개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 원칙적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수리될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청구의 취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.

2023. 8. 30.

법원주사보

이상철



※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(2023년단10652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위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(가사소송법 제12조,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, 제2항).
- ※ 법원에 가사소송, 가사비송, 가사신청사건 등을 접수할 경우에는 통상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,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등은 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,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,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 참조)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가사비송4단독 법원주사보 이상철
직통전화 : 041-620-3058
팩 스 : e-mail :

등본입니다.

2023. 8. 30.

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

법원주사보 이상철

